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47-01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CONTENTS

제1장 법 제정 의의

006 • 제정 배경
• 제정 의의
• 주요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개정 연혁

제2장 적용 범위

010 1. 기본 전제
012 2.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014 3.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5호)

제3장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022 1. 부정청구등의 금지 (법 제2조제6호)
023 2. 부정청구등 인지 후 부정이익 확정 (법 제2조 · 제13조 · 제14조)
024 3. 부정이익 환수 처분 (법 제7조 · 제8조)
027 4. 제재부가금의 부과 (법 제9조~제11조)
030 5.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032 6. 이의신청 (법 제15조)

제4장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034 1. 명단공표의 요건 및 절차 (법 제16조)
036 2.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11조)

제5장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041 1.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 (법 제17조·제24조)
042 2.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법 제24조)

제6장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048 • 행정청의 기록 · 관리 내용 (법 제25조)
• 이행실태 점검 (법 제26조)
• 국회 등의 특례 (법 제27조)

제7장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052 • 신고자등의 보호 (법 제18조)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법 제20조)
• 신분보장 (법 제19조)
•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부록
064 공공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080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질의·응답
092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120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장
법 제정 의의

- 제정 배경
- 제정 의의
- 주요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개정 연혁

Ⅰ 법 제정 의의

제정배경

○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 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 필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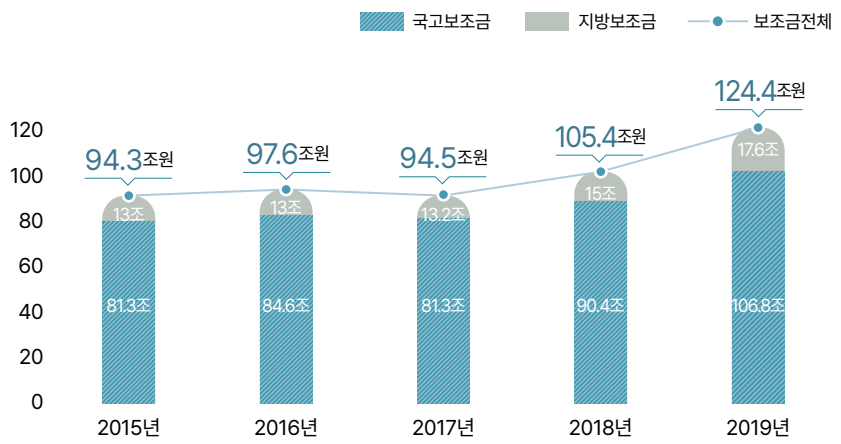

○ **부정청구 시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현행법률 1,446개(법률 제정 당시 '18. 4월 기준) 전수조사시 **환수규정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원 근거 법률 913개, 환수 규정 법률 138개,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법률 21개

[입법 추진 경과]

-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14. 2. 5.)
- 19대 국회 법안 제출('15. 6월)
-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후 20대 국회 제출('16. 6월)
- 국회 정무위 의결('18. 7.)
- 국회 본회의 통과('19. 3. 28.), 공포('19 .4. 16.)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 1. 1)

제정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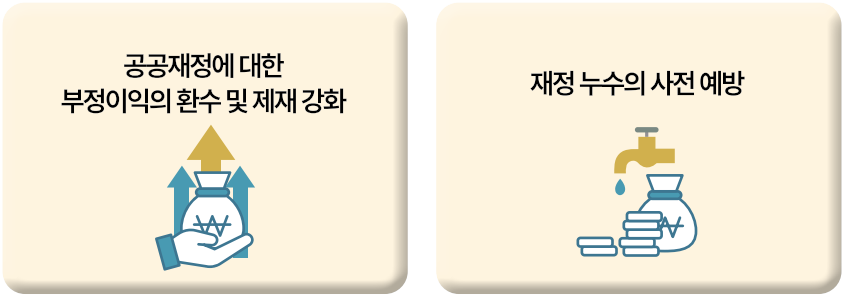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 · 시행('20. 1. 1.)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 · 공립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 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 **(실효성 확보)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행정청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출석, 자료제출 등 요구 등 조사** 실시

○ **(신고자 보호·보상)** 신분보장등조치요구, 신변보호 및 보상금 · 포상금 지급

공공재정 환수법 주요 개정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시행 (2020. 1. 1.)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 · 관리 체계를 확립
2021. 1. 5.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2020. 7. 15.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2021. 12. 7.	•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
2023. 6. 22.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2장
적용 범위

- 기본 전제
-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5호)

Ⅱ 적용 범위

1 기본 전제

적용 시점
(부칙 제2조 <법률 제16323호, 2019.4.16.>)

○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부정청구 시점이 아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매월 지급받아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가 2020. 3월에 적발된 경우

⇒ '19. 12. 31.까지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제외하고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이 부정이익에 해당

적용 배제
(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다른 부담금

○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급중단)**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
- **(환수)**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성질상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봄

- **(제재부가금)** 다른 법률에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를 위한 금전을 부과한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봄

- **(조사의 실시)**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다른 법률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처분, 명단공표,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 **개별법에 환수 규정만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라 **환수 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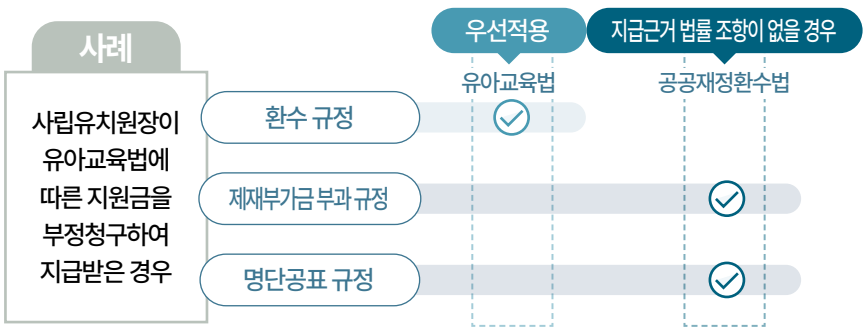

* 지급근거법이 우선 적용
지급근거법률에 관련조항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 법률(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우선 적용**

2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 · 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시 · 군 · 구), 시 · 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 **(공운법상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각급 국·공립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 개념]

환수처분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행사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권한을 갖는 행정청만이 가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만이 환수 처분권자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5호)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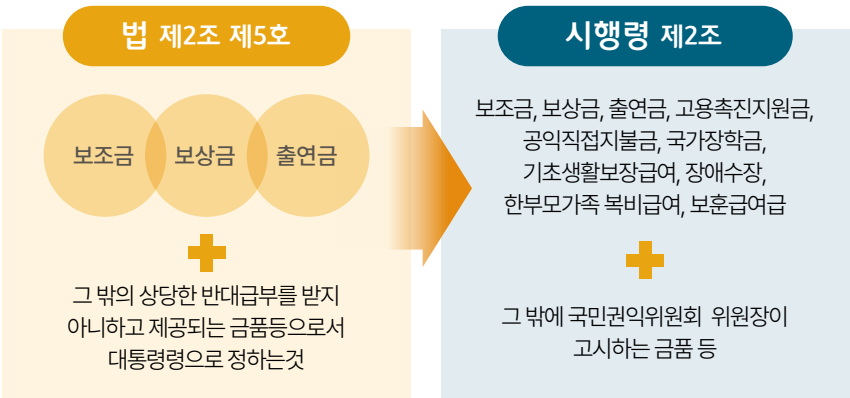

공공재정 지급금의 법적 요건

○ **(지급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 제2조제5호)

○ **(재원)** 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 등

○ **(지급형태)** 금전, 채권, 물품, 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 **(지급특성)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❶ 보조금 등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
❷ 국가 및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실의 보상**
❸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공공 목적을 수행 기관 운영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
❹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금품등
❺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금품등
❻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 재정지급금 대표사례

○ **어린이집 보조금**(「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 개축 및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 **유가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 2001년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 이에 따라 증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

-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중앙 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세목

310-01	손실보상금	340-03	해외자본이전
310-03	포상금	350-01	기관운영출연금
310-04	기타보전금	350-02	사업출연금
320-01	민간경상보조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320-05	이차보전금	350-04	민간기금출연금
320-06	구호 및 교정비	360-01	연구개발인건비
320-07	민간자본보조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360-03	연구개발건축비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360-04	연구개발장비 · 시스템구축비
340-01	해외경상이전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 표시 세목은 국고보조금으로「보조금법」우선 적용

예시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업출연금(350-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지방 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편성목 및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01	의료 및 회복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10-01	국외경상이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표시 세목은 지방보조금으로「지방보조금법」우선 적용

예시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전통시장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통계목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310-01	보상금
310-03	포상금등
320-01	민간경상보조
320-07	이차보전금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
320-14	민간자본보조
340-01	해외경상이전
350-01	출연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20-01	인건비지원
620-03	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예시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목적사업비(620-03)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19년 기준)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각급 국 · 공립 학교 소관 공공재정의 경우 예산 과목이 통일되지 않아 해당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을 비목기준으로 특정할 수 없음

예시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공공재정 지급금의 근거 법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

공공재정 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3장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등의 금지 (법 제2조제6호)
- 부정청구등 인지 후 부정이익 확정 (법 제2조 · 제13조 · 제14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법 제7조 · 제8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법 제9조~제11조)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 이의신청 (법 제15조)

Ⅲ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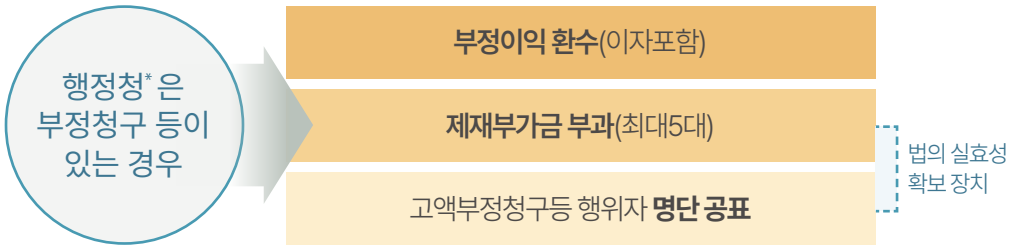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1 부정청구등의 금지

부정청구 등의 금지
(법 제2조제6호)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부정청구등 구분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 · 규정 · 사규 포함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부정청구등 인지 후 부정이익 확정 (법 제2조·제13조·제14조)

지급 중단과 조사의 실시

○ **(지급중단)**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 가능

○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청의 출석 · 진술 ·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청의 조사 대상>

- 부정수익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 차용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사업장 등 출입조사)** 소속 공무원이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 ·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시설 ·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청 요구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출입조사 가능

※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와 사무소 · 사업장 출입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행정청은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를 위해 필요시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 등의 열람 · 복사, 그 등본 ·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부정이익과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가액 산정)**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받거나 사용한 금품등의 금액

※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부정청구등 구분

구분	내용
허위청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 **(부정수익자)** 부정이익을 얻은 개인 및 단체

※ 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3 부정이익 환수 처분 (법 제7조·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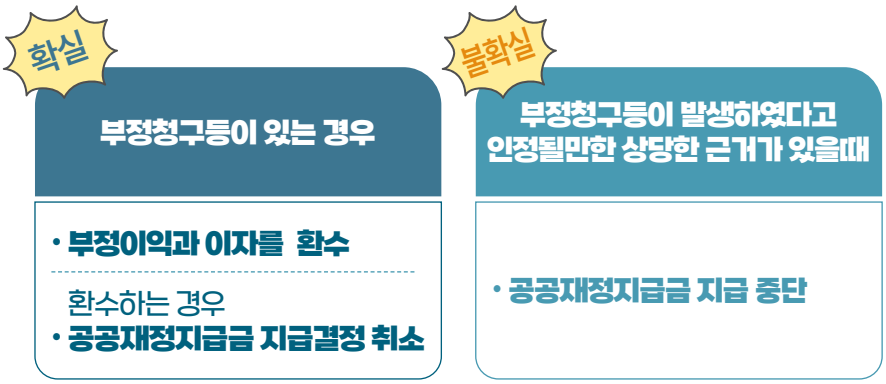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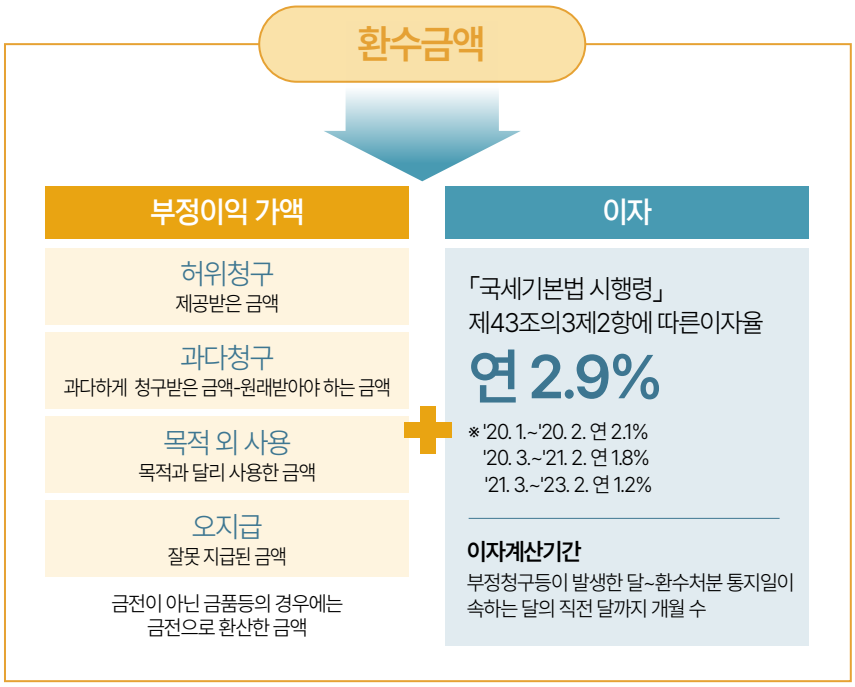

이자 산정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함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함

-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함

부정이익 환수처분 통지

○ **(지급결정 취소)**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함

○ **(범죄혐의 통보)** 부정수익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환수처분 통지)** 행정청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환수금액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환수사유
- 부정이익
- 이자
-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
-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함
- 납부기관
- 납부방법

※ 서식 1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참조

환수금액 산정 예시

사례

A가 '20.2월에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 1,0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A에게 '21.9월에「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처분통지*를 내렸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A에게 고지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 다른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규정이 없는 경우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2.1% / '20.3.~'21.2. 연1.8% / '21.3.~'23.2.연1.2% / '23.3.현재 연2.9%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 부정이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 가액에「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총 납부금액
10,000,000원	+	257,500원	+	20,000,000원	=	**30,257,500원**

이자 계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19개월='20.2월~'21.8월) * 이자= 부정이익 가액 x 계산기간(개월수) x「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x 1/12(연리) ->1,000만원 x 1개월 ('20.2월) x 0.021 x 1/12 + 1,000만원 x 12개월('20.3월~'21.2월) x 0.018 x 1/12+ 1,000만원 x 6개월('21.3월~'21.8월) x 0.012 x 1/12=17,500원 + 180,000원 + 60,000원 = 257,500원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2조제6호다목, 영 제3조제2항제3호, 별표1 제재부가금(2,000만원)=부정이익 가액(1,000만원) x 2배(목적외 사용)

4 제재부가금의 부과 (법 제9조~제11조)

제재 부가금의 부과

○ **(요건)** 행정청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의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제재 부가금의 적용배제

○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하며,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단,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없이 원상에 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재 부가금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 산정)** 부정이익 가액에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50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하여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00%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200%

제재 부가금의 감면 사유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행정청의 과실
50%	100%

○ **(면제)**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을 감경**할 수 있음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몰수·추징,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 **(면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 **(감경·면제)**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함)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함

- (제재부가금 부과 전)
  -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
  -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음
- (제재부가금 부과 후)
  -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
  -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면제

제재 부가금 부과·징수 통지

○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시 다음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부정청구등의 종류
- 제재부가금
-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함
- 납부기관
- 납부방법

※ 서식 1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참조

5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절차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에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이내로 함

○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5%를 초과하지 않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2%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의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더한 이자율

가산금 산정 예시

사례

행정청이 A씨에게 고지한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10,000,000원)에 '20.9.30.까지 납부기한을 주었는데 체납한 경우 가산금 계산은?

법 제12조, 영 제8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3개월 경과일부터 60개월 이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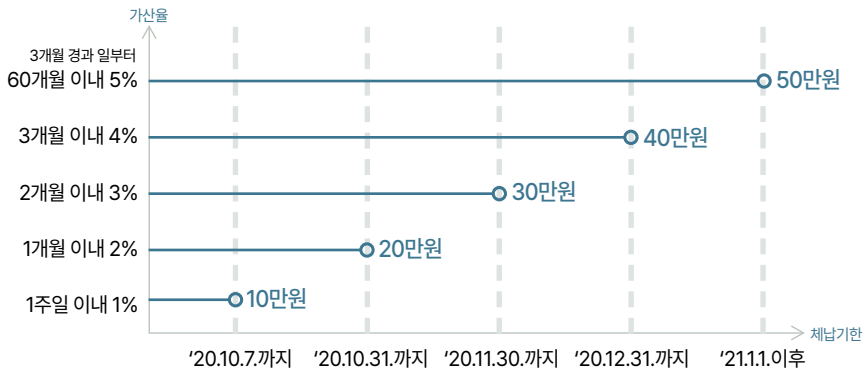

체납처분

○ **(독촉)**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함

※ 서식 2 : 독촉장 참조

○ **(징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재산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공매 등

6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5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가산금 · 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서식 3 : 이의신청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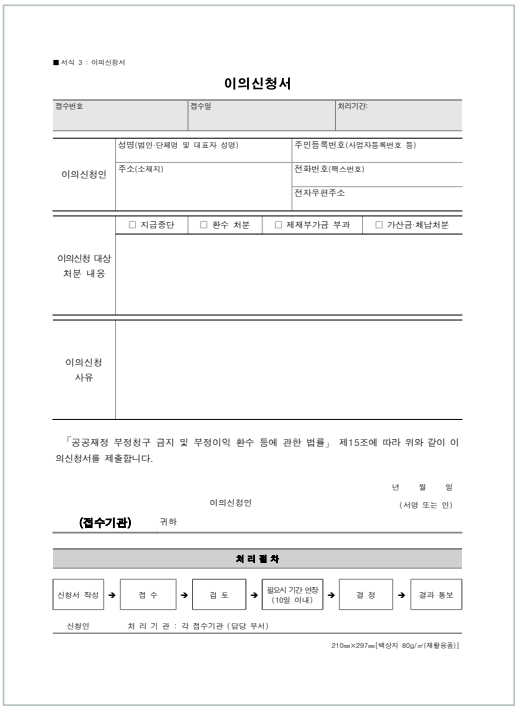

■ 서식 3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지급중단	□ 환수 처분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 결 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210mm×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4장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 명단공표의 요건 및 절차 (법 제16조)
-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11조)

Ⅳ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1 명단공표의 요건 및 절차

명단공표의 요건 및 절차
(법 제16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재제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 **(공표)**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예시

▸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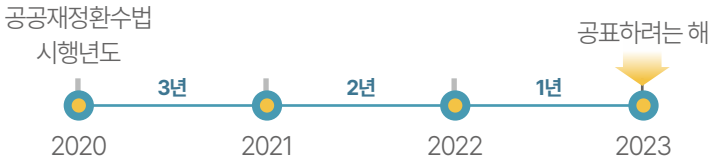

○ **(공표기간 연장)**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함**

○ **(명단 공표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함

-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공표 대상자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공표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로 심의위원회가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명기회 부여)** 행정청은 명단공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

※ 서식 4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참조

※ 서식 5 : 명단공표 소명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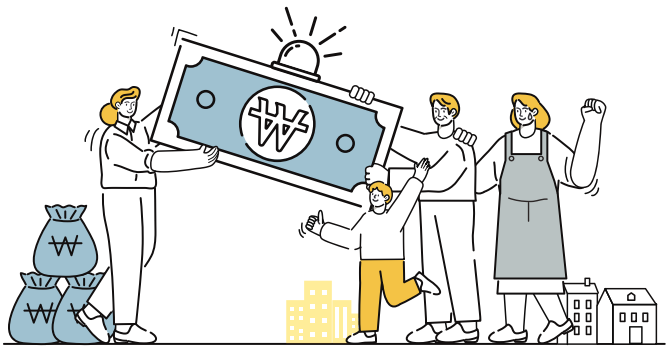

2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11조)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 위원장 :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 – 고위공직자 3명 이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
–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_ 1차례 연임 가능

사전 통지 및 이의 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기간

1년간 _ 미납 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_ 매년 3월31일까지

공표내용

-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 · 법인 · 단체는 대표자
-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

○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위촉**

-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명 이내

* 기초지방자치단체 : 5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의 공직자)
공공기관 :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원
각급 국공립 학교 : 교수 또는 수석교사

-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 · 행정 · 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5명 이내

심의위원회 운영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사유)**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됨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기관 · 법인 · 단체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

-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 · 법인 · 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 · 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 · 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 · 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 · 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 · 법인 · 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 **(기피 신청)** 명단공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회피)**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 **(위원 해촉)**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함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5장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 (법 제17조 · 제24조)
-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법 제24조)

V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 (법 제17조·제24조)

신고 접수기관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등의 부정청구등 신고의무[1)]

○ 공직자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정청구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정청구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자의 성실 의무[2)]

○ 부정청구등의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신고의 방법[3)]

○ 신고 접수기관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책임관등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1)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등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적용
2)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 의무) 적용
3)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신고의 방법) 적용

2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준용

신고 내용의 확인[4)]

○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고자와 부정청구등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신고 접수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조사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 신고 접수기관은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4)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적용

○ **(신고의 보완)**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음

신고의 이첩·종결·송부[5)]

○ **(신고 이첩)** 신고 접수기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함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 감사원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 **(신고 종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음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신고 접수기관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송부)** 신고 접수기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음**

---

5)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적용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및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신고자 인적사항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신고자 통지)** 신고를 이첩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또는 송부한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을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조사결과의 처리[6)]

○ **(처리기한)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 송부한 기관(신고 접수기관)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 **(결과통보)**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신고 접수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해서 통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 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신고 접수기관은 **조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함

-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통지받은 후 7일 이내)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신고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재조사요구)** 신고 접수기관은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6)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적용

○ **(재조사결과 통지)**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신고 접수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함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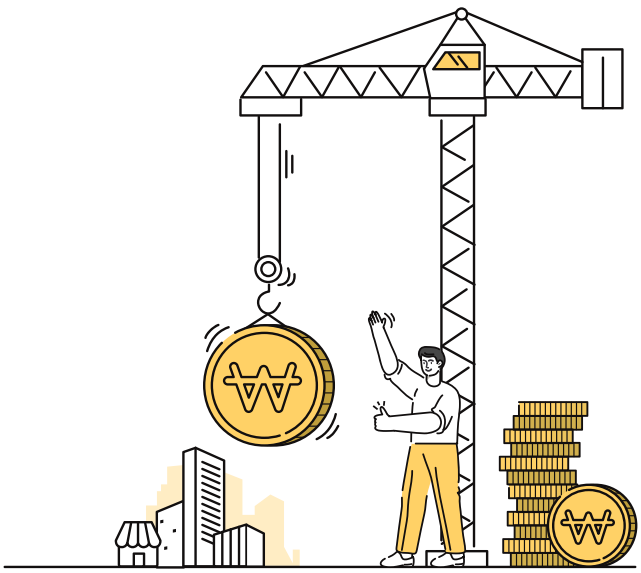

제6장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 행정청의 기록 · 관리 내용 (법 제25조)
- 이행실태 점검 (법 제26조)
- 국회 등의 특례 (법 제27조)

VI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행정청의 기록·관리 내용

(법 제25조)

■ 서식 6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4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부과금액	납부기한	적용배제·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 ☑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 ☑ 처분일
- ☑ 처분대상자
- ☑ 처분 사유
- ☑ 처분 금액 및 납부 기한
- ☑ 명단공표 방법 등
- ☑ 기타

○ 행정청은 다음 ①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 ②에 규정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① 처분 구분	② 기록·관리 사항
지급 중단(제7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기타 기록 ·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정이익등 환수(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제9조) 가산금·체납처분(제12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기타 기록 ·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명단공표(제16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6. 기타 기록 ·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서식 6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참조

이행실태 점검
(법 제26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

○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의 이행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국회 등의 특례
(법 제27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관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7장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등의 보호 (법 제18조)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법 제20조)
- 신분보장 (법 제19조)
-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및 보상

Ⅶ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등의 보호
(법 제18조)

○ 누구든지 다음의 신고 등을(이하 '신고등'이라 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함)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
-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한 사람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벌칙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법 제20조)

법 제20조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됨.**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벌칙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위 확인)**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보도되었을 때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 위원회는 신고자등 신분노출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징계 등 조치 요구)**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분보장
(법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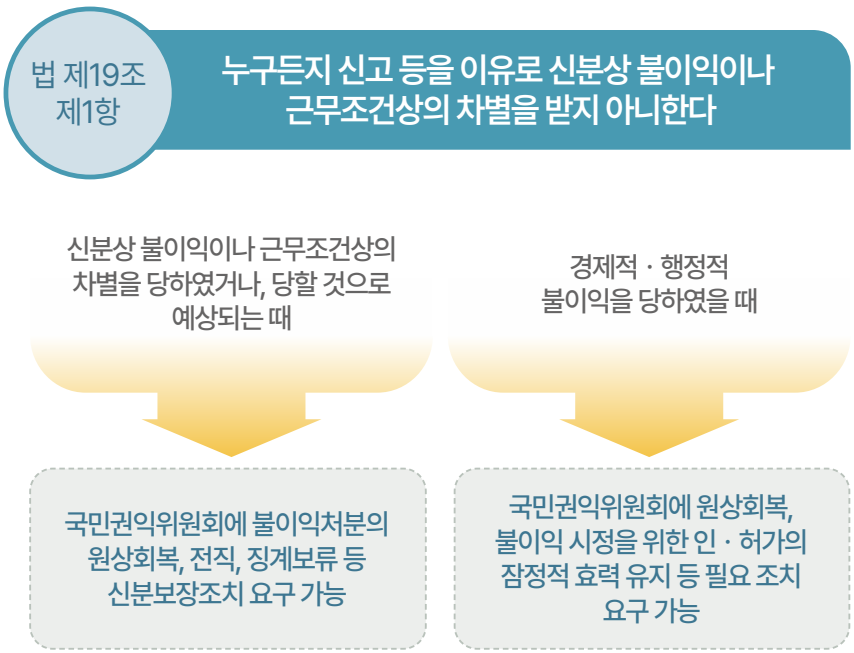

○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 **(조사 착수)** 위원회는 신고자등으로부터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함)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 **(조사 방법)**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음의 요구 ·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벌칙 : 위원회의 요구 ·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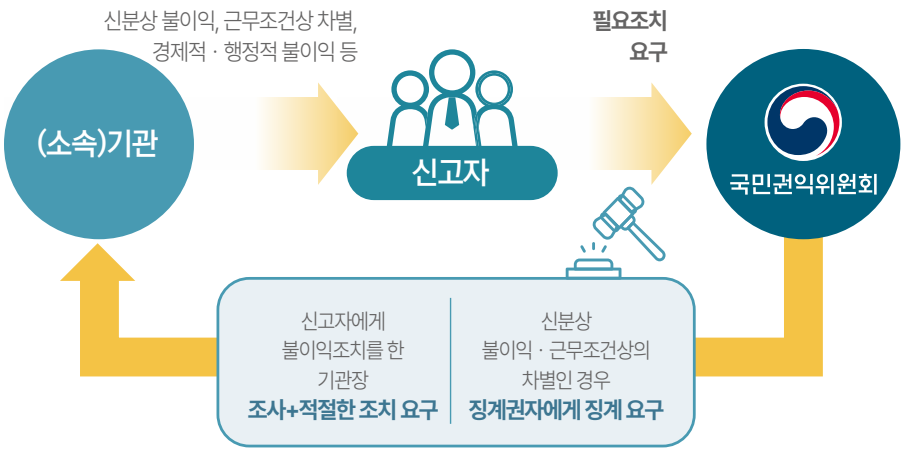

○ **(신분보장등조치 요구)**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벌칙 :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공직자인 신고자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신분보장 등)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 요구)**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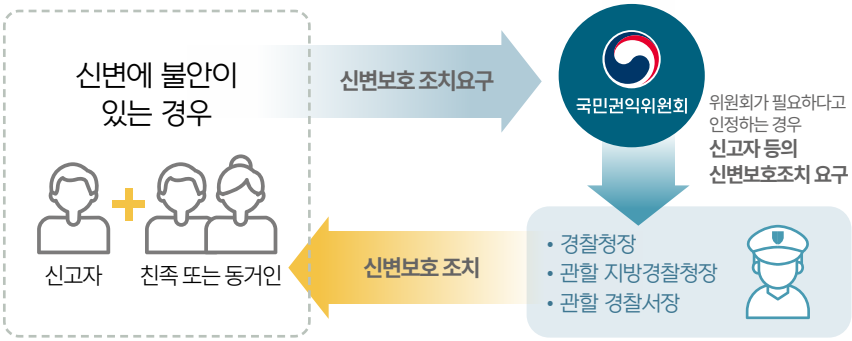

○ **(신변보호조치)**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고자 포상 및 보상[7)]

보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자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 **(보상금 지급신청)**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부정 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

○ **(보상금 지급)**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로 하고,지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함

* 보상대상가액 :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 **(보상금 감액기준)**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7) 법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위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이고,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음

○ **(보상금 등의 중복지급 금지 등)**[8]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 포상금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지급받을 보상금 · 포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보상금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지급받을 보상금 · 포상금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의 보상금 ·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함

○ **(포상금 지급)** 위원회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 · 중단 ·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8)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적용

■ 서식 1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⑥+⑦)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2 : 독촉장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등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지급중단	□ 환수 처분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	결 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4: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서식 6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4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부과금액	납부기한	적용배제·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록

- [참고1] 공공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 [참고2]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질의·응답
- [참고3]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참고4]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

참고1 공공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2024. 00.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청구등"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신고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기관"이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공직자등"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등이나 이에 준하는 공직자등을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4조(신고 상담) ① 책임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책임관등"이라 한다)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등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책임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내용, 부정청구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등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

② 신고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의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신고자 보호 · 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책임관등은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등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책임관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6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신고서 접수 시에 신분 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② 책임관등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책임관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책임관등은 제1항의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책임관등은 신고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등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초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 책임관등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책임관등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은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정청구등이 확인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등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함)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보호 · 보상제도 안내) 책임관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3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책임관등은 신고사항을 조사 ·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60조에 따른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제14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책임관등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자등의 보호 등

제15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공직자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 또는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 · 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② 공직자등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 ①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 신고등을 하거나 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등은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의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등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21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 · 접수, 조사 · 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 · 조사 · 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침적용) ①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 · 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	과장*(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정청구등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	피신고자	신 고 자	신고제목	처 리 결 과	이의신청(기관)	조 사 결 과	이의신청(조사결과)	재 조 사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신청번호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과 접수담당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 고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확인	
			작성자 (제출자)	담당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기관명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

○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권익위 재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보호제도 안내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782(신고자보호), 044-200-7742~7748(신고자보상)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기관명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2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질의·응답

부정청구등 유형

Q 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동결 및 인하 등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원비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교육청에 원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학급운영비를 과다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직접 청구하지는 않으나, 사립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 수준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이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의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학급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항목에 따라 학급운영비 수준이 결정된다면, 유치원의 보고행위를 청구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항목을 토대로 학급운영비가 결정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보고하여 운영비를 과다 수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대법원 2013두1980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Q 공공기관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ㅇㅇ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장학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계속지원(단발성 지원이 아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의 성적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때 장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상 '허위청구'와 '과다청구'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허위청구(법 제2조제6호가목)'와 '과다청구(법 제2조제6호나목)'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허위청구'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하는 행위이고, '과다청구'는 청구할 자격은 있으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외장학생의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은 이수학점, 성적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성적 등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은 해외장학생의 계속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위조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시점에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학기의 장학금 청구자격을 상실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소비지원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말합니다.

생애 최초로 ㅇㅇ지역화폐를 20만원 이상 충전한 신규이용자 및 ㅇㅇ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누적 결제한 기존이용자에 대해 소비지원금 5만원을 지급(사용기한 1개월)합니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이용자가 ㅇㅇ지역화폐 충전을 취소하여 충전액이 20만원 미만이 되거나 기존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ㅇㅇ지역화폐 누적 결제액이 2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지원금 환수대상액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의 '부정이익'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에서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 4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소비지원금의 환수대상은 소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이용자가 ㅇㅇ지역화폐 충전을 취소하여 충전액이 20만원 미만이 되거나 기존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ㅇㅇ지역화폐 누적 결제액이 2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비지원금을 받았다거나 (허위청구·과다청구), 이를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 (목적외사용)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정변경(충전 또는 결제 취소)에 따른 오지급으로 판단되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오지급도 부정청구등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지원금 환수대상액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정이익에 해당합니다.

Q 정부는 정부 학자금이 다른 학자금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非공공재정지급금으로 발생하는 학자금 중복지원*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오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 공공기관 장학금 지급 후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는 경우 등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본 건 학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이 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각 목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의 행위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환수 등 관련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라목의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되어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위 '잘못'이라는 것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지급되어 공공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뒤에 공익법인 등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중복지원이 발생된 것으로 중복 지원된 학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라목의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국가가 A단체에 지급하는 ㅇㅇ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을 A단체의 사무직원이 횡령한 경우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는 "부정청구등"에 대해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가목),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나목) 또는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다목) 등으로 정합니다.

ㅇㅇ지원금은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 등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A단체 사무직원이 이를 횡령한 행위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가목)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이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부정청구의 주체는 지원금을 수령한 주체인 A단체 또는 해당 A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자(예를 들어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무직원은 해당 A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원의 지원금 횡령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으로 보기에는 곤란 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 해석은 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쟁점 등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 사립학교 행정실 소속 사무직원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전액 지원받고 있는 교직원 급여를 횡령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는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주체는 교육청이고, 지급받는 주체는 해당 사립학교로 판단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는 자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부정청구등(목적외사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는 주체인 학교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공재정지급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횡령한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은 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쟁점 등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Q ㅇㅇ재단은 A지자체 거주 대학생 대상으로 'ㅇㅇ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이 오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가 가능한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금품등인 공공재정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오지급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재단법인 ㅇㅇ재단은 A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자체장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위 조례에 따르면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의 오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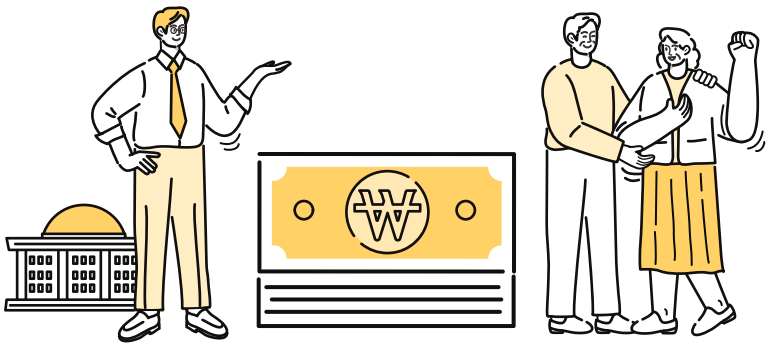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Q 보조금이 일정 비율로 각각 매칭(국비, 도비, 시비)되어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위 보조금 관련하여 부정청구 발생 시 제재부가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은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할 경우 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있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공기관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환수와 더불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공공기관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배제

Q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항의 규정(사전 통지 전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등의 모두 반환에 따른 제재부가금 미부과)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 및 제재에 대한 일반법으로, 각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 조사, 이의신청, 명단공표,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재부가금 제도는 부과·징수, 감면, 적용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하면서 감면과 관련해서 공공재정환수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개별 법률의 제재부가금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준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후 부정수익자가 환수액을 전액 납부했을 때,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수익자가 행정청의 환수처분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이후에 환수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기준일(공공재정환수법 상의 사전 통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상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상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될 때 사전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발송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Q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대표(원장)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보조금 허위청구를 사유로 부과된 것*으로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참고로 제재부가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도 공공재정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행정청은 ㅇㅇ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지원금 대상자가 '19. 10월부터 '20. 6월까지 총 1,440,000원 ('19. 10월 ~ 12월 : 480,000원, '20. 1월 ~ 6월 : 96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발견하여 '20. 7월에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법 시행('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20. 1월 ~ 6월까지 지급된 ㅇㅇ지원금 960,000원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된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제제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6호, 2023. 3. 21.,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 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법	시행령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법	시행령
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 ·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경우 3.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 ·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 ·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제재부

법	시행령
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 납부 ·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 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법	시행령
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

법	시행령
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 ·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 · 시설 ·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 ·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 ·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 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 · 상호 · 나이 및 주소(기관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및 기관 · 법인 · 단체의 명칭 · 주소를 말한다)

법	시행령
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 · 방법 · 절차, 소명의 기간 · 방법 · 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

법	시행령
	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 · 행정 · 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 · 법인 · 단체에

법	시행령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 · 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 · 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 · 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 · 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 · 법인 · 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법	시행령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등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 · 감사 · 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 · 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 ·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 · 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 · 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 · 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법	시행령
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	

법	시행령
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법	시행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29.> 1.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및 "보상대상가액"은 각각 "포상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21.>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 ·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13.>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법	시행령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같은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법	시행령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본조신설 2021. 12. 7.]	

법	시행령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 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 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 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 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 ·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 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 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법	시행령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 관리에 관한 사무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법	시행령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632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309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시행령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 ·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81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5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 · 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제33545호, 2023. 6. 13.>**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령
제2조(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6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4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8.]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3-2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6. 320-06 구호 및 교정비
7. 320-07 민간자본보조
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 · 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회복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 · 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2. 310-01 보상금
3. 310-03 포상금등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7 이차보전금
6. 320-11 학생단체지원경비
7. 320-14 민간자본보조
8. 340-01 해외경상이전
9. 350-01 출연금
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 620-01 인건비지원
12. 620-03 목적사업비
13.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4.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1.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관련)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가축전염병 예방법」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9.	「건강가정기본법」
10.	「건강검진기본법」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술 진흥법」
14.	「건축기본법」
15.	「건축법」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19.	「결핵예방법」
20.	「경관법」
2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계량에 관한 법률」
2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	「고등교육법」
2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0.	「고용보험법」
31.	「고용정책 기본법」
3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골재채취법」
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7.	「공공외교법」
38.	「공공주택 특별법」
39.	「공동주택관리법」
4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2.	「공인중개사법」
43.	「공직선거법」
4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5.	「공항시설법」
46.	「과학기술기본법」
47.	「관광진흥법」
4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0.	「광업법」
51.	「교육기본법」
5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53.	「교통안전법」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5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7.	「국가기술자격법」
58.	「국가보안법」
59.	「국가보훈 기본법」
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	「국가재정법」
6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4.	「국가표준기본법」
6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6.	「국립공원공단법」
6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6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7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2.	「국립해양박물관법」
7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4.	「국민건강보험법」
75.	「국민건강증진법」
7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7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9.	「국민영양관리법」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국제선박등록법」
8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8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4.	「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군사법원법」
8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90.	「군인사법」
91.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9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9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6.	「기상법」
97.	「기상산업진흥법」
98.	「기술보증기금법」
9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0.	「긴급복지지원법」
101.	「김치산업 진흥법」
102.	「낙농진흥법」
10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4.	「난민법」
10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7.	「남북협력기금법」
108.	「내수면어업법」
10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11.	「노인복지법」
1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13.	「노후준비 지원법」
1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15.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0.	「농약관리법」
1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3.	「농어업재해대책법」
1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25.	「농어촌정비법」
1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27.	「농업기계화 촉진법」
12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3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1.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2.	「농지법」
13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4.	「다문화가족지원법」
135.	「대기환경보전법」
1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7.	「대외무역법」
1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9.	「대학도서관진흥법」
14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14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4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4.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5.	「도로교통법」
146.	「도로법」
147.	「도서관법」
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9.	「도시개발법」
1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6.	「도시철도법」

15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60.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61. 「독립기념관법」
1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3. 「동물보호법」
164. 「동물위생시험소법」
16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166.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69. 「말산업 육성법」
1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71. 「모자보건법」
1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7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6. 「문화재보호기금법」
177. 「문화재보호법」
1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9. 「물류정책기본법」
18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 「물환경보전법」
18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4. 「발명진흥법」
1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87. 「방송법」
188. 「방위사업법」
18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90. 「방조제 관리법」
19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범죄피해자 보호법」
19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95. 「법률구조법」
19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97. 「변호사법」
198. 「병역법」
199. 「보건의료기본법」
20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1. 「보건환경연구원법」
2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9.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11. 「북한인권법」
212. 「비료관리법」
2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15. 「사도법」
216. 「사료관리법」
217. 「사방사업법」
2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20. 「사회보장기본법」
2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23. 「사회복지사업법」
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5. 「사회적기업 육성법」
22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7. 「산림기본법」
2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9.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230. 「산림보호법」
2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33. 「산업발전법」
234. 「산업안전보건법」

2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38.	「산업표준화법」
2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4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4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4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46.	「석면안전관리법」
2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48.	「석탄산업법」
249.	「선박안전법」
25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2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54.	「소비자기본법」
2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6.	「수도법」
2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5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25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61.	「수산업협동조합법」
262.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263.	「수산자원관리법」
26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65.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7.	「숙련기술장려법」
2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69.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70.	「습지보전법」
271.	「식물방역법」
272.	「식생활교육지원법」
27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4.	「식품산업진흥법」
275.	「식품안전기본법」
276.	「식품위생법」
277.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278.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8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82.	「아동복지법」
283.	「아동수당법」
28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5.	「아이돌봄 지원법」
286.	「암관리법」
28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9.	「약사법」
290.	「양곡관리법」
291.	「양성평등기본법」
29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94.	「어장관리법」
2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9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9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0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1.	「연안관리법」
302.	「영유아보육법」
3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4.	「예비군법」
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06.	「외국인투자 촉진법」
307.	「외무공무원법」
308.	「외식산업 진흥법」
30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10.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311.	「원양산업발전법」
312.	「원자력안전법」

313. 「위생용품 관리법」
3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316. 「유료도로법」
3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21. 「의료급여법」
322. 「의료법」
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326. 「인삼산업법」
32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3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29. 「임금채권보장법」
3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31. 「입양특례법」
332. 「자동차관리법」
3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36. 「자연공원법」
337. 「자연환경보전법」
3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3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4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4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4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9. 「장애인복지법」
350. 「장애인연금법」
3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52.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5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5. 「재외동포기본법」
35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5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59. 「전쟁기념사업회법」
3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6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3. 「전파법」
364. 「정당법」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7. 「정부법무공단법」
36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70. 「정치자금법」
37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3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73. 「제품안전기본법」
374. 「조경진흥법」
3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6. 「종자산업법」
377. 「주거급여법」
378. 「주거기본법」
37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0. 「주차장법」
381. 「주택법」
38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8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8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85. 「중소기업기본법」
3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8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91.	「중재법」
39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9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9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95.	「지방문화원진흥법」
39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9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00.	「지역문화진흥법」
40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02.	「지역보건법」
403.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5.	「직업안정법」
406.	「진로교육법」
40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11.	「철도안전법」
41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4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4.	「청소년 기본법」
415.	「청소년 보호법」
416.	「청소년복지 지원법」
417.	「청소년활동 진흥법」
418.	「초지법」
419.	「최저임금법」
420.	「축산물 위생관리법」
421.	「축산법」
4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23.	「출입국관리법」
4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25.	「치매관리법」
4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27.	「콘텐츠산업 진흥법」
4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4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30.	「택지개발촉진법」
431.	「통일교육 지원법」
43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4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3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3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436.	「평생교육법」
437.	「폐기물관리법」
4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9.	「하수도법」
440.	「하천법」
44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43.	「학교보건법」
444.	「학술진흥법」
445.	「한국부동산원법」
446.	「한국고전번역원법」
447.	「한국공항공사법」
448.	「한국광해광업공단법」
4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5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451.	「한국국방연구원법」
45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453.	「한국국제협력단법」
45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4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4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458.	「한국도로공사법」
459.	「한국법학원 육성법」
460.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4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46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4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64.	「한국석유공사법」
465.	「한국수자원공사법」
46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46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46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47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472.	「한국철도공사법」
473.	「국가철도공단법」
47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47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7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477.	「한국환경공단법」
478.	「한부모가족지원법」
4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1.	「한의약 육성법」
482.	「한 · 아프리카재단법」
483.	「항공보안법」
484.	「항공사업법」
485.	「항공안전법」
486.	「항로표지법」
487.	「항만법」
48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49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92.	「해외건설 촉진법」
49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494.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49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97.	「해운법」
49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4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0.	「혈액관리법」
50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2.	「형사소송법」
5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0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5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07.	「환경보건법」
50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10.	「희귀질환관리법」
511.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51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5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14.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5.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6.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7.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518.	「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2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23.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2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5.	「광주과학기술원법」
5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527.	「지능정보화 기본법」
52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2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53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531.	「뇌연구 촉진법」
5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53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53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535.	「소프트웨어 진흥법」
536.	「울산과학기술원법」
537.	「원자력 진흥법」
5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39.	「한국과학기술원법」
54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541.	「영재교육 진흥법」
542.	「보훈기금법」

544.	「국방과학연구소법」
545.	「군인복지기금법」
546.	「신용보증기금법」
54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548.	「한국재정정보원법」
549.	「농촌진흥법」
55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51.	「국민체육진흥법」
552.	「문화예술진흥법」
553.	「스포츠산업 진흥법」
5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5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56.	「산업디자인진흥법」
55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558.	「에너지법」
55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5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56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5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63.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64.	「소방기본법」
56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56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56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56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5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7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7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573.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7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76.	「환경정책기본법」
57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57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57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0.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8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8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8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586.	「생명공학육성법」
58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5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5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59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9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9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593.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594.	「산업융합 촉진법」
5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 행 일 | 2023년 12월

기획 · 제작 | 공공재정환수관리과